

##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시정명령 공표

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2026. 2. 9.

파주시장

### 1. 시정명령 대상

- 가. 대지위치: 와동동 1471-2, -3번지(운정1·2지구 P1, P2블럭)
- 나. 분양사업자: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
- 다. 분양신고 수리일: 2021. 11. 23.(2021-주택과-분양신고-8)

### 2. 시정명령 내용

- 가. 관계법령: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1항제5의3호나목
- 나. 정정사항

구분	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	
	기존	정정
오피스텔 2단지 분양광고	상대보호구역	해당없음

### 3. 시정명령 사항

- 가.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 사항 등을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해당 간행물·분양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
- 나. 시정명령 이행 전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였거나,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공표 내용 통지